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79호 2017. 7. 10(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2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9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2호 통 행 제 한 공 고 ----- 11
- 인천광역시 공고 제894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안) 공고·열람 ----- 13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2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 ----- 16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2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2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4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49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 - 81호

##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7. 1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도로)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9-3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서구 가좌동 139-3번지 일원	1,848.9	감) 0.1	1,848.8	2009.12.09.	
변경	문화시설	어린이도서관	서구 가좌동 139-3번지 일원	990.0	증) 0.1	990.1	2009.12.09.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서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주차장	·주차장 변경 ·면적:기정-1,848.9㎡ 변경-1,848.8㎡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의 오차를 반영
변경	문화시설	·문화시설 변경 ·면적:기정-990.0㎡ 변경-990.1㎡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의 오차를 반영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및 도서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서관)
  - 사업의 명칭 : 노외주차장 및 도서관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주차장 : A = 1,848.8㎡
  - 도서관 : A = 990.1㎡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주차관리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lt;용지조서&g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가좌	139-3	대	1,764.6	1,764.6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8동 1001호	이석				
2	가좌	139-49	공장용 지	1,074.3	1,074.3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8동 1001호	이석				
계				2,838.9	2,838.9						

## &lt;지장물 조서&gt;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가좌동	139-3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층, 일반철골구조	621.68㎡	-	-	-	
		2	소매점	2층, 일반철골구조	326.00㎡	-	-	-	
		3	창고시설 (창고)	2층, 일반철골구조	295.68㎡	-	-	-	
		4	수목	관상수 H=3.5m, B=0.17m	1주	-	-	-	
		5	수목	관상수 H=5.5m, B=0.24m	2주	-	-	-	
		6	수목	관상수 H=5.8m, B=0.15m	2주	-	-	-	
		7	가설건물 (창고)	컨테이너 3.0x6.0x2.5	2동	삼익가구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육생육사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8	가설건물 (화장실)	샌드위치판넬 3.0x2.5x2.8	1동	육생육사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칠형제 감자탕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9	가설구조물 (화물승강기)	일반철골구조 2.2x0.9x7.0	1기	삼익가구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코인가구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139-49	10	계단	일반철골구조 1.6x5.7x1.0	1기	육생육사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칠형제 감자탕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11	상호간판	일반철골구조 3.5x5.0	1기	삼익가구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12	가설건물 (창고)	컨테이너 3.0x6.0x2.5	1동	삼익가구	가좌동139-3	건물 임차인 소유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7 - 82호

##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43호(2017. 4. 2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 시설【주차장, 사업명 :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7. 1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 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1	주차장	서구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1,736.7	서구고시 제2017-4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용지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보인(㎡)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217-31	장	784.9	784.9	성복순 외5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1				
2	217-32	장	255.2	255.2	성형제 외1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 105동 303호(괴안동, 대진아파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서구 신현동 283-3		근저당권 지상권
3	217-33	대	248.1	248.1	김정옥	서구 건지로318번안길 13-1(가좌동)	가좌2,3,4동새마을금고	서구 가좌동 217-11		근저당권
4	217-34	장	352.2	352.2	김병일	계양구 새벌로 89, 101동 707호 (효성동, 성지아파트)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동 51(회현동1가)(용현동지점)		근저당권
5	217-35	도	94.3	94.3	성복순 외8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1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서구 신현동 283-3		근저당권
6	217-36	장	2.0	2.0	이현호	서구 오류동 78-1				
계				1,736.7						

### <지장물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일련번호	지번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토지소유자		물건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217-31	장	주택	세외/콘크리트블록, 토담벽	성복순외5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1			
2	217-32	장	재배작물	고추, 파, 콩 등	성형제외1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9, 105동303호(대진APT)			
3	217-33	대	주택	연와조/스라브	김정옥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18번 안길 13-1(가좌동)	김정옥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18번 안길13-1(가좌동)	
4	217-34	장	공장	일반철골구조	김병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9,101동 707호(성지APT)	김병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9,101동707호(성지APT)	
5	217-31	장	한전주	전주번호: 8662 534 7 R4 L4	성복순외5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1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삼곡동 254-9	
6	217-34	장	체신주	-	김병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9,101동 707호(성지APT)	한국통신(KT) 서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탁록로34번길 9	
7	217-12	대	담장	콘크리트 블록	김찬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328동 1306호			
8	217-23	장	담장	콘크리트 블록	오민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202동606호(주공아파트)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84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원당동 810-12번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신축
2. 사업주체 : 조봉환, 정지연, 정호건설(주) (대표 천수범)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2번지
  - 나. 대지면적 : 6,294.1㎡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1,995.5㎡ (지하1층, 지상4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3개동 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변경내용
    - 1) 사업주체 변경
      - 기존 : 조봉환, 정지연, 함해근, 정선태, 천수범
      - 변경 : 조봉환, 정지연, 정호건설(주) (대표 천수범)
4. 사업기간 : 2016. 08. 26. ~ 2017. 10. 03.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 - 85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2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2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7. 1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중1-2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도로)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156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금회)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7	20~32	보조 간선	4,565 (215)	광로 3-9	대로 2-29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70-54 ( '70.02.09)	
변경	중로	1	27	20~32	보조 간선	4,565 (215)	광로 3-9	대로 2-29	일반 도로	-	면적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27	중로1-27	■면적변경 - 당초 : 5,957㎡ - 변경 : 5,906.7㎡ (감 50.3㎡)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면적 변경(경미한 변경)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도로:중1-27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1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1-27호선)

○ 사업의 명칭 : 염곡로(중1-2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있음)

구분	노선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점	중 점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중로 1-27호선	20~32	215	5,957	서구 가정동 120-156	서구 가정동 298-2	건교부고시70-54 ( '70.02.09)	
변경	중로 1-27호선	20~32	215	5,906.7	서구 가정동 120-156	서구 가정동 298-2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 당 초 : 2016. 02. 29. ~ 2017. 06. 30.

○ 변 경 : 2016. 02. 29. ~ 2017. 07. 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3번참조(상세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8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7. 0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원당대로 331-15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7. 0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7-07-0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70-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331-15 (왕길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86-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58 (불로동, 불야성 A)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86-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60 (불로동, 불야성 B)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86-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62 (불로동, 불야성 C)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39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 5 (심곡동)	2009-09-22	옛날 넓은 평야가 있던 지역으로 대평이라 불려왔기에 지명을 반영하여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6-6	인천광역시 서구 보들8로 24 (오류동, (주)우경일렉텍)	2012-10-25	보들로에서 여덟번째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6-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들8로 30 (오류동, (주)우경일렉텍)	2012-10-25	보들로에서 여덟번째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7-8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46 (가정동)	2012-10-25	" 봉오재" 란 옛지명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15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96 (경서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경관특성화 계획에 의거 사파이어 존에서 착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06-5	인천광역시 서구 대촌로25번길 4 (오류동)	2009-09-22	대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2-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102번길 12 (오류동)	2012-10-25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1,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29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24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7-42호

## 통행제한공고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7. 7. 10.

### 인천광역시서구 검단출장소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소1-203호 및 중2-473호선
제한의 대상	전 차량
구 간	불로초교 ↔ 불로중학교 (소 1 - 203호선 및 중 2 - 473호선)
기 간	2017.08.10. 부터 도로 소1-203호선(검단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개설 완료 시 까지
사 유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소1-203호선 미개설로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 등
비 고	첨부 “차량 진입 차단 및 허용 구간 위치도” 참조

# 차량 진입 차단 및 허용 구간 위치도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94호

##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0.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 내용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당초) 2,096,757㎡ → (변경) 2,092,989㎡ (감 3,768㎡)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의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A	15	국지도로	600	원창동 대2-40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B	15	국지도로	283	원창동 대1-116	원창동 중2-A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C	15	국지도로	272	원창동 대1-116	원창동 중2-A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D	15	국지도로	124	구역경계	원창동 대2-116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E	15	국지도로	130	구역경계	원창동 대2-116	일반도로	

## 3)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

## ○ 공업용지(변경)

도면번호	기 정					변경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치	획지	필지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치	획지	필지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계		17획지 2필지	503,677.6		계		34필지	478,938.7					
I	I-1(1)	240,304.7	1	45,756.8	-	I-1(1)	61,684.4	1	-	17,293.4	필지 분할 가능 I-1(3),1(4), 1(5)로 분할 필지 분할 가능 I-1(6),1(7) 로 분할			
			2	46,513.7	-			2	-	21,771.1				
			3	46,323.9	-	I-1(2)	23,041.1	1	-	11,393.9				
			4	46,323.5	-			2	-	11,647.2				
			5	-	55,386.8	I-1(3)	54,590.5	1	-	12,502.4				
			6	-	55,386.8			2	-	12,502.0				
			7	-	55,386.8	I-1(4)	52,822.2	3	-	15,034.0				
			8	-	55,386.8			4	-	14,552.1				
			I-1(2)	76,416.0	1	-	76,416.0	I-1(4)	52,822.2	1		-	12,581.7	필지 분할 가능
						2	-			12,581.3				
	3	-				14,073.9								
	4	-				13,585.3								
	I-1(5)	50,386.8				1	-	12,502.1						
							2	-	12,501.7					
							3	-	12,932.4					
							4	-	12,450.6					
	I-1(6)	24,267.5				1	-	12,005.9						
							2	-	12,261.6					
	I-1(7)	25,187.6	1	-	12,466.6									
				2	-	12,721.0								
	I-2(1)	51,289.9	1	14,048	-	I-2(1)	51,290.4	1	-	14,048.0	필지 분할 가능 지적분할측량값 반영			
				2	16,892			-	2	-		16,891.1		
				3	20,349.9			-	3	-		20,351.3		
	I-2(2)	93,931	1	18,017	-	I-2(2)	93,933.2	4	-	18,017.2				
				2	8,937			-	5	-		8,936.8		
				3	8,899			-	6	-		8,899.6		
				4	18,520			-	7	-		18,520.8		
				5	13,200			-	8	-		13,200.5		
				6	12,937			-	9	-		12,937.4		
				7	13,421			-	10	-		13,420.9		
I-2(3)	41,736	1	14,384	-	I-2(3)	41,735.0	11	-	14,383.5	필지 분할 가능 지적분할측량값 반영				
			2	13,621			-	12	-		13,620.7			
			3	13,731			-	13	-		13,730.8			

도면 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가구 번호	면적 (㎡)	필 지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계	-	-	6획지	97,840			6필지	97,839.3	-
II	II-5	97,840	1	16,635	II-5	97,839.3	1	16,633.5	필지 분할 가능 지적분할측량값 반영
			2	16,524			2	16,521.5	
			3	16,570			3	16,568.8	
			4	15,974			4	15,976.7	
			5	16,027			5	16,029.1	
			6	16,110			6	16,109.7	

※ I-1(1)~1(7), I-2(1)~2(3), II-5 필지 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구모	최소필지구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35)
-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

## 4.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23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때로”를 “때”로, “개시될”을 “개시(開始)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속하는날”을 “속하는 날”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직과 숙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함”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소원등”을 “청소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1인이 월1회”를 “1명이 월 1회”로, “1인으로”를 “1명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이”를 “1명이”로, “2주1회”를 “2주 1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연락등”을 “업무연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직근무자로 하여금”을 “당직근무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직원중”을 “당직원 중”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간”을 “기관 간”으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 그 소속기관”을 “따라 그 소속 기관”으로, “소속 실·과장”을 “소속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자가”를 “받은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조정,”을 “조정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0분전”을 “30분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일”을 “전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고전”을 “신고 전”으로, “당직근무 일지”를 “당직근무일지”로, “당직주무부서”를 “당직 주무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근무시간중”을 “근무시간 중”으

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 후반”을 “전·후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직 사령”을 “당직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일직시”를 “일직 시”로, “종료시”를 “종료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숙직시”를 “숙직 시”로, “익일”을 “다음 날”로, “기타의 전, 후반 구분없”을 “그 밖에 전·후반 구분 없”으로 한다.

제10조 중 “전후반”을 “전·후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장(이하 “총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작동중”을 “작동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때에 주무실·과장”을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장”으로,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인”을 “외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무기고등”을 “무기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을 “긴급한 경우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당

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비치”를 “비치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기관간”을 “기관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동시 제반”을 “동시에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하기관에 대해서”를 “산하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주무부서”를 “당직 주무부서”로, “비상근무중”을 “비상근무 중”으로, “당직주무 부서”를 “당직 주무부서”로,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24조 중 “비상소집시”를 “비상소집 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당직주부무서의 지시에 의하여”를 “당직 주부무서의 지시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비상근무중의 당직)”을 “(비상근무 중의 당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비상근무중일”을 “비상근무 중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반”을 “각 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 무 반 :”을 “총무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황처리반 :”을 “상황처리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 락 반 :”을 “연락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

호 중 “총 무 반 :”을 “총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황처리 반 :”을 “상황처리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연 락 반 :”을 “연 락반:”으로, “담당직원”을 “담당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각반 을 2개조”를 “각 반을 2개 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비상근무기간 중”을 “비상근무기간 중”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발령시는 구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발령 시는 구상황실에 비상근무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전화 :”를 “안전전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안전화 :”를 “치안전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반전화 :”를 “일반전화:”로 하며, 같은 항 제4 호 중 “행정전화 :”를 “행정전화:”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당직 사령”을 “당직사령”으로, “보고 수명”을 “보고하 고 그 지시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를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로, “30분간격”을 “30분 간격”으로, “당직주무 부서”를 “당직 주무부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과 사무실

제31조제2항 중 “경계근무중”을 “경계근무 중”으로 한다.

제32조 중 “발령기간중”을 “발령기간 중”으로 한다.

제33조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필요시 전화기간”을 “필요 시 전화기 간”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 보완)”을 “(직원 비상소집명

부의 정비·보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직원비상소집명부”로, “월1회”를 “월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 보완”을 “정비·보완”으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37조 중 “제정 운영한다”를 “제정·운영한다”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24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 라 한다)” 란, 조례 또는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

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 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에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다만,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의결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 후 집행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

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의원연구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연구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W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아래 의원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결과	내용	
	결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직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2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주요결정사항”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위임 할”을 “위임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부분만”을 “해당 부분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열람시”를 “열람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열람기간”을 “열람 기간”으로, “열람장소”를 “열람 장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다음”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 의장이 부의하는”을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서구의회의 의장이”를 “서구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심의회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위촉 해제한다.

제12조제6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촉위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것외”를 “것 외”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지 제1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생년월일(남,여)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남,여)을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생년월일(남,여)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남,여)을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 별지 제4호서식 】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b>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생년월일(남,여)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남,여)을 기재</li> <li>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인천광역시 서구 ○○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남,여)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남,여)을 기재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26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와 제16조”를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을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위촉한”을 “임명하거나 위촉한”으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3항”을 “영 제10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을 “위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삭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각각 “위원회”로, 같은 항 중 “개 의 하 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사·용역·물품등”을 “공사·용역·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심의내용”을 “심의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심의 하계”를 “심의하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을 “따라 회의를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를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심의”를 “따라 심의”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4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 2억원 미만”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를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2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표시 한다”를 “표시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을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당직위”를 “해당 직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의사항”을 “회의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을 “규정한 것 외에는”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28호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육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젓소, 로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을 “사육동물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개별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존치함”을 “존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2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체육회(이하“생활체육회””를 “체육회(이하 “서구체육회””로, “종목별연합회”를 “구종목단체”로, “생활체육회를”을 “서구체육회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30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회관 운영·관리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
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6.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의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구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이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구에서 부담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6조제2호 중 “문화회관 및 문화·체육” 을 “체육” 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